

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문 병 훈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재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하지만 동 조례의 경우 야외운동기구 관리에 있어 안내문의 게시 및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,

「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통해 안내문 게시 및 유지 관리 규정을 명문화하여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의 예방을 통해 안정

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칠 것입니다.

감사합니다.